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6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6. 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설치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물놀이장 시설 추가(별표 1)

시 설 명	소 재 지	주 요 시 설	비고
척과천 야외물놀이장	다운동 311번지 일원	물놀이시설, 어린이풀, 유수풀	

나. 운영시간 변경 : 10시부터 18시까지 ⇒ 10시부터 21시까지(안 제6조)

다. 물놀이장 이용료 시설명 삭제(별표 3)

어린이(만5~12세)	청소년(만13~18세)	성인(만19세이상)	비고
1,000원	2,000원	3,000원	

라.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보험가입 (안 제9조)

3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 : 2014. 4. 16. ~ 2014. 5. 7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18시까지”를 “21시까지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보험가입)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1

【별표 1】

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

시 설 명	소 재 지	주 요 시 설	비고
동천 야외물놀이장	남외동 964번지	물놀이기구, 어린이풀, 성인풀	
척과천 야외물놀이장	다운동 311번지 일원	물놀이기구, 어린이풀, 유수풀	

【별표 2】

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(제5조 관련)

1. 물놀이장 입수시 충분한 준비운동 후 풀장(물)에 들어갑니다.
2. 물놀이장 이용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
3.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4. 풀장(물)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수영복·수영모 착용합니다.
5. 물놀이장에서는 장난을 치거나 뛰어 다니지 않습니다.
6. 노약자, 임산부, 음주자, 신체상의 부적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
7. 오물이나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넣어주십시오.
8. 음식물 반입은 절대금지 합니다.
9.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별지 2

【별표 3】

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(제7조 관련)

어린이(만5~12세)	청소년(만13~18세)	성인(만19세이상)	비고
1,000원	2,000원	3,000원	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운영) ① (생략) 1.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중으로 하고 이 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2. 성수기(1개월간) 야간개장은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21시까지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제9조(보험가입)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 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【별표1】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시 설 명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소재지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주요시설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동천야외 물놀이장</td> <td>남외동 964번지</td> <td>물놀이지설, 어린이풀, 성인풀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명	소재지	주요시설	비고	동천야외 물놀이장	남외동 964번지	물놀이지설, 어린이풀, 성인풀		<p>【별표1】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시 설 명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소재지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주요시설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동천야외 물놀이장</td> <td>남외동 964번지</td> <td>물놀이지설, 어린이풀, 성인풀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척과천야외 물놀이장</td> <td>다운동 311번지일원</td> <td>물놀이지설, 어린이풀, 우수풀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명	소재지	주요시설	비고	동천야외 물놀이장	남외동 964번지	물놀이지설, 어린이풀, 성인풀		척과천야외 물놀이장	다운동 311번지일원	물놀이지설, 어린이풀, 우수풀	
시 설 명	소재지	주요시설	비고																		
동천야외 물놀이장	남외동 964번지	물놀이지설, 어린이풀, 성인풀																			
시 설 명	소재지	주요시설	비고																		
동천야외 물놀이장	남외동 964번지	물놀이지설, 어린이풀, 성인풀																			
척과천야외 물놀이장	다운동 311번지일원	물놀이지설, 어린이풀, 우수풀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
<p>【별표2】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물놀이장 입수시 충분한 준비운동 후 풀장(물)에 들어갑시다. 2. 물놀이장 이용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. 3.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4. 풀장(물)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수영복·수영모 착용합니다. 5. 물놀이장에서는 장난을 치거나 뛰어 다니지 맙시다. 6. 노약자, 임산부, 음주자, 신체상의 부적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 7. 오물이나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넣어주십시오. 8. 음식물 반입은 절대금지 합니다. 9.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중구청장</p>	<p>【별표2】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(제5조 관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물놀이장 입수시 충분한 준비운동 후 풀장(물)에 들어갑시다. 2. 물놀이장 이용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. 3.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4. 풀장(물)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수영복·수영모 착용합니다. 5. 물놀이장에서는 장난을 치거나 뛰어 다니지 맙시다. 6. 노약자, 임산부, 음주자, 신체상의 부적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 7. 오물이나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넣어주십시오. 8. 음식물 반입은 절대금지 합니다. 9.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중구청장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
<p>【별표3】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설 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린이 (만5~12세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소년 (만13~18세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인 (만19세이상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천야외 물놀이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명	어린이 (만5~12세)	청소년 (만13~18세)	성 인 (만19세이상)	비고	동천야외 물놀이장	1,000원	2,000원	3,000원		<p>【별표3】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(제7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린이 (만5~12세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소년 (만13~18세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인 (만19세이상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어린이 (만5~12세)	청소년 (만13~18세)	성 인 (만19세이상)	비고	1,000원	2,000원	3,000원	
시 설 명	어린이 (만5~12세)	청소년 (만13~18세)	성 인 (만19세이상)	비고															
동천야외 물놀이장	1,000원	2,000원	3,000원																
어린이 (만5~12세)	청소년 (만13~18세)	성 인 (만19세이상)	비고																
1,000원	2,000원	3,000원																	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년 6월 2일 · 중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(의안번호 제1064호)
(2014년 6월 16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최해근 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설치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물놀이장 시설 추가(별표 1)

시 설 명	소 재 지	주 요 시 설	비고
척과천 야외물놀이장	다운동 311번지 일원	물놀이기구, 어린이풀, 유수풀	

- 2) 운영시간 변경 : 10시부터 18시까지 ⇒ 10시부터 21시까지(안 제6조)
- 3) 물놀이장 이용료 시설명 삭제(별표 3)

어린이(만5~12세)	청소년(만13~18세)	성인(만19세이상)	비고
1,000원	2,000원	3,000원	

- 4)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보험가입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검토보고자 : 김규협 전문위원)

- 울산광역시 중구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설치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은
 - 물놀이장 시설에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추가하고
 - 운영시간을 10시부터 18시에서 10시부터 21시까지 변경
 - 별표3의 시설명에 동천야외물놀이장 삭제하며
 - 안 제9조안에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보험가입 추가 등으로
-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